- (사) "벽이음"이라 함은 강관, 클램프, 앵커 및 벽 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, 충격 등의 수평 및 수 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부재를 말한다.
- (아) "작업발판"이라 함은 비계 등에서 작업자의 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으로 걸침고리가 용접 또는 리벳 등에 의하여 발판에 일체화되어 제작된 작업대와 걸침고리가 없는 통로용 작업발판 등이 있다.
- (자) "강관 비계용 부재"라 함은 비계용 강관을 강관조인트와 클램프 등으로 조립하여 설치한 비계를 구성하는 부재를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「산업안전보건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 이라한다),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,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(이하 "안전인증고시"라 한다) 또는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4. 강관비계 작업의 준비와 관리

## 4.1 준비

- (1) 작업계획, 작업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비계의 조립도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  - (가) 강관비계용 재료의 안전인증품 여부
  - (나) 비계의 치수(높이, 길이, 폭)
  - (다) 구조물의 형태와 구조물과 비계 사이 간격
  - (라) 작업발판, 안전난간, 가설통로 및 낙하물방지망, 수직보호망 등의 설치계 회
  - (마) 보강 방법(출입구, 단부, 우각부 등)
  - (바) 비계 높이가 31m 이상이거나 발주자 또는 인·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계는 관계전문가(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에 따른다)로부 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.